

소규모합병 공고

당사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이사회 승인으로 에스지에이이피에스(주)와 소규모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1. 합병방법 : 에스지에이솔루션즈(주)가 에스지에이이피에스(주)를 흡수합병 함.
2. 합병비율 : 에스지에이솔루션즈(주)(합병법인) : 에스지에이이피에스(주)(피합병법인)
= 1.00000000 : 0.00000000
3. 소멸회사의 현황
 - ① 상호 : 에스지에이이피에스(주)
 - ② 본점 소재지 : 경기도 의왕시 광진말로 54, 비동 531호
4. 합병기일 : 2026년 01월 01일
5. 소규모합병 : 에스지에이솔루션즈(주)와 에스지에이이피에스(주)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
6.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 - ① 행사절차 : 2025년 11월 11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중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소규모합병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
 - ② 기간 : 2025년 11월 11일 ~ 2025년 11월 25일 (※특별계좌 주주(명부주주보다 3일전)
 - ③ 행사방법 및 장소 : 위 기간까지 별첨의 "소규모 합병 반대의사표시 통지서"를 거래 증권사 또는 아래 주소로 제출 (※특별계좌 주주는 발행사(당사) 제출)
- 우편: 경기도 의왕시 광진말로 54, 비동 525호 (초평동,의왕스마트시티퀀텀)
IR팀 담당자 앞 (Tel. 02-574-6856)
 - ④ 주식매수청구권 :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
 - ⑤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에 반대의사 통지 시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함

2025년 11월 11일

에스지에이솔루션즈 주식회사

대표이사 최 영 철



[별첨]

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

에스지에이솔루션즈(주) 대표이사 귀하

본인은 에스지에이솔루션즈(주)와 에스지에이이피에스(주)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
통지합니다.

주 주 번 호		주 주 명	
소유주식의 종류		소유주식수	

2025년 1월 1일

성명 : (서명 또는 날인)

주민등록번호 :

주소 :

연락처 :